

제 호

신속처리 대상 첨단바이오향약품 지정서

1. 제품 명칭:
2. 제품 유형:
3. 효능·효과:
4. 구성 성분:

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향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제3항 및 「첨단바이오향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속처리 대상 첨단바이오향약품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